

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경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441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8. 21.
발의자 : 이경애 의원 외 2명

1. 개정이유

-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에 고위험군을 신설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함(안 제2조)
-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, 보육기관 추가(안 제5조)
-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확대(안 제7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1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
6. 현행조례 : 붙임4

7. 예산수반사항 : 붙임5 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8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9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6 (부서 검토의견서)

【붙임 1】

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”을 “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 6조에 따른 응급의료제공과 재정지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”를 “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 확보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(현행의 제3호) 중 “자동제세동기(자동심장충격기)”을 “자동심장충격기(AED)”로, “응급장비”를 “의료기기”로 한다.

3. “고위험군” 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(허혈성심장질환, 심부전, 부정맥, 고혈압, 이상지질증 등)를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)”을 “(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현행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· 관리에 대한 계획(이하 “응급의료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(현행의 제목 외의 부분)제4호 중 “응급의료에 관하여”를 “응급의료 제공을 위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원)”을 “(응급의료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”를 “응급의료”로, “사항은”을 “사항에는”으로, “호와 같다”를 “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1.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

2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의 제목 “(응급장비 설치대상)” 을 “(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”을 “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응급장비의”를 “응급장비”로, “시설로 한다.”를 “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.”를 “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이하 공동주택, 보육기관 및 다중이용시설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응급장비의 관리)” 을 “(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의 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응급장비”를 “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”로, “다중이용시설 등”을 “설치권장시설”로, “정기점검”을 “매월 1회 정기점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자동제세동기”를 “자동심장충격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관내 어린이집 · 학원 ·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
2.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
3.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
4.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8조제1항 중 “자동제세동기”를 “자동심장충격기”로, “등 그”를 “및 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이경애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9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제공과 재정지원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.
1. (생 약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응급처치”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,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.	2. ----- ----- <u>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확보</u> , -----.
<신 설>	3. “고위험군”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(허혈성심장질환, 심부전, 부정맥,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 등)를 말한다.
3. “자동제세동기(자동심장충격기)”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<u>응급장비</u> 를 말한다.	4. “자동심장충격기(AED)”----- ----- ----- <u>의료기기</u> -----.
4. (생 약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3조(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) 안산시
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설>

제4조(지원)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

2.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·홍보

3.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

② (생략)

제3조(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관리에 대한 계획(이하 “응급의료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-----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응급의료 지원) ① 응급의료----- 사항에는 -----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

2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<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응급장비 설치대상)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치의무대상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.

2.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.

제6조(응급장비의 관리)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,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)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<신 설>

제5조(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)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

1. -----
----- 응급장비
시설

2. -----

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이하 공동주택, 보육기관 및 다중이용시설

제6조(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의 관리)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 설치권장시설
----- 매월 1회 정기점검

-----.

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) ① ----- 자동심장충격기

-----.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

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관내 어린이집 · 학원 ·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

2.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

3.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

4.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② ~ ④ (생략)

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
제8조(홍보 · 지원 등)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8조(홍보 · 지원 등) ① -----

----- 자동심장충격기 -----

---- 및 그 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441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8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의 관리에 있어 관련 부서에서 내실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일수를 변경하고자 하며,
- 안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 조정

□ 주요골자

- “매월 1회”를 “반기별”로 수정 (안 제6조)
- 각 호의 위치 조정 (안 제7조제2항)

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6조 중 “매월 1회” 를 “반기별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2항 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,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제공과 재정지원-- ----- ----- -----.	제1조(목적)(개정안과 같음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	제2조(정의)(개정안과 같음)
1. (생 략) 2. “응급처치”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,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.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확보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3. “고위험군”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(허혈성심장질환, 심부전, 부정맥, 고혈압, 이상지질증증 등)를 말한다.	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	

<p><u>3. “자동제세동기(자동심장충격기)”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통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.</u></p>	<p><u>4. “자동심장충격기(AE D)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의료기기</u> -----.</p>	<p>4.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4. (생략)</u></p> <p><u>제3조(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u></p> <p><u>제3조(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관리에 대한 계획(이하 “응급의료 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	<p>5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3조(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) ①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응급의료 제공을 위해</u> -----</p>	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4조(지원)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	<p><u>제4조(응급의료 지원) ① 응급의료 ----- ----- <u>사항에는</u> ----- -- <u>호의 사항이 포함되어</u></u></p>	<p><u>제4조(응급의료 지원)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	<u>야 한다.</u>	
<u>1.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</u>	<u>1.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</u>	1.(개정안과 같음)
<u>2.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·홍보</u>	<u>2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	2.(개정안과 같음)
<u>3.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</u>	<u><삭제></u>	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<u>제5조(응급장비 설치대상)</u> <u>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	<u>제5조(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)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-----</u> -----.	제5조(개정안과 같음)
<u>1. 설치의무대상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<u>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.</u></u>	<u>1. -----</u> ----- ----- ----- <u>응급장비</u> ----- <u>시설</u>	1. (개정안과 같음)
<u>2.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.</u>	<u>2. -----</u> ----- ----- ----- <u>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이하 공동주택, 보육기관 및 다중이용시설</u>	2. (개정안과 같음)

<p>제6조(응급장비의 관리)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,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의 관리)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---설치권장시설-----매월 1회 정기점검-----.</p>	<p>제6조(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의 관리)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---설치권장시설-----반기별 정기점검-----.</p>
<p>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)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</p>	<p>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) ① -----자동심장충격기-----.</p>	<p>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내 어린이집 · 학원 ·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2.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3.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4.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<p>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	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.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3. 관내 어린이집 · 학원 ·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4.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<p>③ ~ 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홍보 · 지원 등) ① 시</p>	<p>제8조(홍보 · 지원 등) ① -</p>	<p>제8조(홍보 · 지원 등) ①</p>

<p>장은 심폐소생술 및 <u>자동제세동기</u>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----- <u>자동심장충격기</u> ----- ----- ----- 및 그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(개정안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</p>
---	---	--